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위반	위반	위반
가. 법 제13조에 따른 요구가 있는	법 제116조			
경우에 보고・출석하지 않거나	제2항제1호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1)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		50	100	200
우				
2)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300	300	300
나. 법 제14조에 따른 게시 또는 비	법 제116조	30	50	100
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항제2호			

다. 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1)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어주지 않은 경우	11 0 11 <u>11 - 11 - 11 - 11 - 11 - 11 - 1</u>	30	50	100
2) 사실과 다르게 적은 사용증명서 를 내어준 경우		50	100	200
3)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사용증명서에 적은 경우		80	150	300
라. 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 명부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1)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30	50	100
2) 근로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일부를 적지 않거나 변경내 용을 지체 없이 정정하지 않은		20	30	50
경우				
마. 법 제42조에 따른 근로자명부와		80	150	300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항제2호			
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	법 제116조			
장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항제2호			
1)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30	50	100
2) 임금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일부 적지 않은 경우		20	30	50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	법 제116조			
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항제2호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		30	50	100
우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20	30	50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				
부한 경우 아.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	법 제116조	80	150	300
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3호		100	
자.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 증명	법 제116조	80	150	300
서류 비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항제2호			

차. 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여성 근 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 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500	500	500
카. 법 제74조제9항을 위반하여 임	법 제116조	500	500	500
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의	제2항제2호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허				
용하지 않은 경우	v) N4407			
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법 제116조			
근로자가 법 제76조의2를 위반하	제1항			
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F00	1000	1000
1)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		500	1000	1000
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2명 이상에 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2) 사용자가 그 밖의 직장 내 괴롭		300	1000	1000
힘을 한 경우		300	1000	1000
3)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200	500	1000
내 괴롭힘을 한 경우		200	300	1000
파. 사용자가 법 제76조의3제2항을	법 제116조	300	500	500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제2항제2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				
지 않은 경우				
하. 사용자가 법 제76조의3제4항을	법 제116조	200	300	500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	제2항제2호			
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거. 사용자가 법 제76조의3제5항을	법 제116조	200	300	500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제2항제2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				
ф 			-	700
너. 법 제7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법 제116조	300	500	500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제2항제2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HJ - JJ 11 C フ		100	200
더. 법 제91조를 위반하여 재해보상	법 제116조	50	100	200
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폐기한 경우	제2항제2호			
(す)				

러.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작				
성・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항제2호	70	120	950
1)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지		70 40	130 80	250 150
않은 경우		40	00	130
3)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		40	80	150
은 경우		40	00	150
머. 법 제9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	법 제116조	80	150	300
원 선거에 간섭한 경우	제2항제2호			
버. 법 제99조에 따른 기숙사규칙의	법 제116조			
작성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제2항제2호			
1)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		40	80	150
Ŷ				
2) 기숙사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20	30	50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				
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				
를 받지 않은 경우				
3) 기숙사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	50	100
서. 법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법 제116조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	제2항제4호			
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審問)에 대하				
여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서류를 제출				
하지 않거나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500	500	500
1)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		500	500	500
은 의사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근로감독관의 심문에 대하여 진				
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진술을				
물들 아시 끊거나 거짓된 신물들 한 경우				
가)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나) 거짓된 진술을 한 경우		300	300	300
3)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대하여 장			300	

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			
짓 장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가)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50	100	200
경우			
나)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한 경	300	300	300
우			